

제5절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²³

1.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내용		예	아니오
01	[공공저작물의 취득] 제3자(일반적으로 수행사)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역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였다.		
02	[공공저작물의 관리]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변경되면 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운영기관)에 통보 하였다.		
03	[공공저작물의 관리]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l.or.kr)에 가입하여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부여 되는 관리권한을 부여 받았다.		
04	[공공저작물의 관리] 홈페이지에 저작권 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05	[공공저작물의 관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06	[공공저작물의 관리] 공공저작물 관리 중 문의사항 발생시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70-0052)를 활용하고 있다.		
07	[공공저작물의 제공] 공공기관 등이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있다.		
08	[공공저작물의 제공] 책자 형태로 발간된 연구보고서 등에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있다.		
09	[공공저작물의 제공] 우리 기관이 제3자에게 공공저작물의 독점적 이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없다.		
10	[공공저작물의 제공] 저작물의 특성 및 기관 특성상 수익 창출이 필요한 경우, 공공저작물을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여 저작권 사용료 징수 후 제공하고 있다.		
11	[공공저작물의 이용] 우리 기관의 저작물을 국민이 이용시 출처표시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12	[공공저작물의 이용] 공공저작물 제공 중단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		

23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집필하여 주셨습니다.

2.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가이드

1) 개요

- 2014년 7월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시행되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이하 “공공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절차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작물의 취득(귀속)단계부터 이용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공공저작물의 관리 업무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①취득→②관리→③제공→④이용의 4단계로 구분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담당자는 소속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저작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아래 제시된 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단계별 공공저작물 관리 가이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체부 고시 제2019-6호)이 기준이 됩니다.

단계	가이드 안내 순서	참조조문 ²⁴
공공저작물의 취득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취득	5조, 6조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만 취득	
▼		
공공저작물의 관리	담당자의 지정 및 공공누리 사이트 가입	7조 ①항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변경	7조 ③항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8조
	공공누리의 적용	11조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활용	16조
▼		
공공저작물의 제공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9조
	오프라인 인쇄 및 출판을 통한 공공저작물 제공	11조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를 통한 유료 제공	14조
▼		
공공저작물의 이용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 및 제공 중단	15조

공공저작물 관리 가이드(요약)

24 참조조문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고시)」의 조문이며, 설명을 돕기 위해 동 지침상 장(章)의 조문 구성 및 순서 등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저작물의 취득

(1)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이하 '업무상 저작물')이나 위탁용역계약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 받은 저작물의 경우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저작물은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업무를 하며 자연스럽게 생산된 저작물을 말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소속된 기관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위탁용역의 결과물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포함되는 저작재산권 관련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 관련근거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업무상 저작물'의 인정 요건

- 공공기관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주도적으로 참여할 것)
 -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될 것
 -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더불어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²⁵ 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 단계에서 특약 조건으로 명시될 때 비로소 양도되며, 특약 조건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법 제45조 제2항).

25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활용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특약 예시) “수행사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기관에 양도한다”

(2) 저작재산권의 일부만 취득하는 경우

- 일부만 취득하는 경우란, 위탁용역 계약시 저작재산권을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되며, 발주기관이 국민에 공공저작물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행사에 별도의 공공저작물 제공에 대한 동의를 확보시 공공누리 적용 및 국민 제공이 가능합니다.

나. 공공저작물의 관리

(1) 담당자의 지정 및 공공누리 사이트 가입

-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규모 또는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담당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 연구보고서 관리담당자, 사진저작물 관리담당자). 담당자 지정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자의 직책과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용자가 공공저작물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직제변경,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담당자 정보를 변경하고 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운영기관)으로 변경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는 공공누리 사이트 회원가입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는 기관에서 제공 중인 공공저작물이 검색될 수 있도록 웹크롤링 수집 신청을 하거나 1:1 상담, 공공누리 사이트에 연결된 소속 기관의 공공저작물을 이용조건별로 상세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2)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변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법제화되기 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는 게시된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강조하는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이하 “저작권 정책”)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 이후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저작권 정책으로 변경 게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는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를 점검하여 변경된 저작권 정책이 게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변경이 안 되어 있다면 지체 없이 변경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시)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00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000(기관명), 000(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발행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성 명) (연락처)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성 명) (연락처)

(3)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중 위탁용역사업의 경우 저작권재산권의 일부가 수행사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예시와 같이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예시

관리 번호	담당자	계약명	저작물 유형	계약 연도	제목	저작권 권리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 표시	사유

※ 관리 목록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 공공기관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 제1절 문서의 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관리되는 저작권정보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 저작권 침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① 저작권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4) 공공누리의 적용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국민이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라이선스(KOGL)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업무상저작물이나 계약에 의해 저작권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1유형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탁용역에 따라 생산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재산권 확보 정도에 따라 1~4유형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적용 방법 관련 문의: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 1670-0052)




유형 및 심벌마크

[제1유형: 출처 표시]



이용허락의 범위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p>[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p>[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p>
<p>[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공공누리 유형별 심벌마크(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

- 공공누리 적용시 주의사항으로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인력으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권리확인, 용역계약서 검토, 저작권 상담, 임직원 교육 등의 서비스가 무상 지원됩니다.



- 통합상담번호 : 국번없이 ☎1670-0052
- 인터넷상담 : 공공누리 사이트내 Q/A 게시판 활용
- 내방상담 : 통합상담번호로 사전 예약 후 진행
(센터위치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8층
한국문화정보원내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다. 공공저작물의 제공

(1)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 취득한 공공저작물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게시되는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저작물 1건당 1개의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저작물 공공누리 적용방법

- HTML 공통태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 공공누리 1유형 HTML 공통태그 (2~4유형 태그는 공공누리 사이트 공지사항 참고)

```
<!--1유형 --><div style='position: relative;'><div style='position: absolute;'>  
<a href='http://www.kogll.or.kr/info/licenseType1.do' target='_blank'><img alt=  
'제1유형' src='http://www.kogll.or.kr/open/web/images/images_2014/codetype/  
new_img_opentype01.png' /></a></div><div style='padding-left:195px;'> 본 저작  
물은 "공공누리"  
<a href='http://www.kogll.or.kr/info/licenseType1.do' target='_blank'>제1유형:출  
처표시</a>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div></div><!--//1유형 -->
```

-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활용

- 공공누리 유형 선택화면이 제공되는 javascript 기반 스크립트로 공공누리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홈페이지에 적용 활용

- 공공저작물이 서비스 되는 웹페이지 하단에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

- (공공누리 표시 다운로드)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l.or.kr)의 (공공누리 소개 → 공공누리 유형안내)에서 다운로드
- (부착 방법) 홈페이지 게시물 중 공공저작물별로 하단에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

※ 위 가이드를 준용하되, 마크 위치 및 설명 문구는 기관 특성에 맞게 작성 가능

전통문양 검색



유물명 청자양각운화문화형발

무늬명 (동물무늬) 학무늬

제작시기 고려 12세기 전반기

계급 도자기

규격 높이 7.2cm, 입지름 22.3cm, 밑지름 6.0cm

소장기관 선문대학교박물관

▶ 저작권 및 이용범위

· 저작권 :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용범위 : **제 1유형** 출처표시



▶ 데이터 이용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확인

홈페이지 게시물에 공공누리 적용 사례(국립문화재연구소)

(2) 오프라인 인쇄 및 출판을 통한 공공저작물 제공

- 취득한 공공저작물을 배포용으로 인쇄하는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부착하여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자 형태 저작물 공공누리 적용방법

오프라인 책자 형태(연구보고서, 간행물 등)

- 공공누리 마크 다운로드 :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
- 공공누리 유형은 간행물의 우측 상단에 표기
- 간행물의 위쪽 1cm, 오른쪽 1cm 공간배정
- 간행물 크기와 상관없이 공공누리 유형별 표준화된 크기 적용
- ※ 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책자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크기, 위치 조정 가능



오프라인 책자 형태 공공누리 적용 사례
(우측 상단 공공누리 적용)

- 다만, 오프라인 책자 형태 공공저작물을 출판사를 통해 제작하는 경우에 특정 출판사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상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고시)상 출판 및 발행 관련 규정

고시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이트를 통한 유료 제공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과 같이 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 수지차 보전기관과 같이 기관 특성상 수익 창출이 필요한 경우 등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사용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이하 “공공저작권”) 신탁관리를 통해 유료 저작물로 국민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공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저작권 신탁 시 이용허락 업무의 대행,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을 대행합니다. 신탁관리 시스템으로 ALRIGHT(www.alright.or.kr)가 있으며, 신탁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탁된 공공저작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²⁶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고시)상 이용료 징수 관련 규정

고시 제13조(이용료 징수) 제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사이트 : ALRIGHT (www.alright.or.kr)
- 신탁관리 가능 여부 문의 : 1670-0052
- 주요 신탁 공공저작물 : 서울시청(미술저작물), 문화재청(문화재 데이터베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SW저작물) 등

라. 공공저작물의 이용

- 공공누리 라이선스가 적용된 공공저작물 이용 시 이용자는 공공누리 라이선스별 이용조건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라이선스 이용조건에는 ‘출처표시’, ‘상업적 이

26 공공누리 사이트(www.kogil.or.kr) 메인화면과 통합('19년)되어, 하나의 메인화면에서 공공누리과 신탁관리시스템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기존 ALRIGHT 주소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용금지', '변경금지'가 있지만, 출처표시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이용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온라인에서 이용 시)에는 해당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따른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 ○○○’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 (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저작물은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저작물의 특성상 출처표시가 제한되는 경우,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음

- 또한 변경 이용시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동일성유지권 침해²⁷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시에는 공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공공저작물 이용 조건 준수 또는 이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제공 중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 이용조건 준수 요청 또는 이용중단 요청 사유

-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27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법 제13조), 침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3. FAQ

Q. [정의] 공공저작물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A.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체부 고시 제2019-6호)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Q. [적용범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마다 공공누리 부착이 원칙입니다. 먼저 앞으로 생성될 저작물부터 공공누리 적용을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권리확인을 통해 기존에 생산되었던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적용범위] 공공데이터에도 공공누리를 적용해야 하나요?

A.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 제2019-71호)에 따르면, 신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우선 권리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용허락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권이 확보된 공공데이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적용범위] 공공기관의 로고, 상징(CI, MI 등)도 제공 대상인가요?

A. 기관 로고의 경우에는 기관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로고를 임의로 이용하게 된다면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로고, 상징에 관한 웹페이지는 공공누리 미적용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 제2, 4유형의 상업적 활용 금지 조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A.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뜻합니다. 상업적 활동에는 무가지 신문을 통한 광고, 블로그를 통한 기관 홍보 등 간접적인 수익 활동도 포함됩니다.

Q.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 제1, 2유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A. 변경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변경일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이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신탁관리]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는 무엇인가요?

- A.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리의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저작물의 제공은 무료제공이 원칙이나 일부 공공저작물의 경우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국유재산, 공유재산, 수치차 보전기관 등). 이런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후 직접 징수하거나 공공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저작권을 신탁하여 소정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관리제도 문의처 : ☎1670-0052)

4. 상담 사례

Q. 우리 박물관에서 유명 작가의 미술저작물을 기증받았는데, 그렇다면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우리 기관에 있나요?

A. 미술저작물을 기증받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작품 소유권만 양도된 것으로 해석되어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공모전으로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우리 기관에 있는 건가요?

A.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공모전으로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원창작자(출품자)에게 있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로 제공 또는 기관 홍보를 위해 출품작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Q. 외부 사진작가에게 의뢰하여 고궁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미 각 궁에 배포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저작재산권 양도는 받지 않습니다. 활용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촬영 의뢰 시 작성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궁에 배포하고 궁 관리 사무소에서 활용한다는 내용이 과업(또는 계약서)에 포함된다면 저작재산권 양도를 받지 못했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만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사진을 공공누리 라이선스 적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사진의 활용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사진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 또는 저작권 양도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군청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입니다. 공공누리 적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공누리 적용은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누리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누리 사이트(www.kogil.or.kr)에서

배포중인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를 군청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국민에게 제공이 가능한 저작물 공공누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설치하면 게시물 작성 시 공공누리 마크를 선택할 수 있어 공공누리 적용이 용이해집니다. 다만, 게시물의 저작권 확보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에 문의(☎1670-0052)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우리기관에서 공개서비스를 하면서 상업적 이용허락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리 활동, 예를 들어 기관 홍보를 위해 무료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 등도 영리적 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이용의 영리성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주종관계 등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G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수록하면서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홍보하거나 특정 사업체를 광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이라기 보다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판결)

Q. 공공저작물중 사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시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 공적 인물의 경우 초상 이용에 대한 수인한도가 일반인보다 크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인물의 가족사진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판례는 이미 대중에 많은 부분이 노출된 공적 인물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수인 가능성을 넓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 가족들 또한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초상권 또는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치인이나 배우, 가수 기타 예능인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직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사용방법, 태 양, 목적 등에 비추어 유명인으로서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 또는 저하시키는 경우 기타 본인의 성명이나 초상이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욕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1. 10. 24. 선고 2001나30680판결)

- Q. 공공기관 중에서 홈페이지 메인에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곳과 미부착 기관이 있는데,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모든 자료사용에 대한 허가인지 궁금하며, 부착되어 있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각 개별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시작화면(메인)에 부착된 공공누리 표시는 해당 누리집에서 공공누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뜻하는 것이며, 누리집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이 공공저작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작화면(메인)에 공공누리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게시물 하단에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경우에 한해, 각 이용조건(공공누리 제1~4유형)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